

4.5.3 동학(童學)장학금은영규정

제정 2000. 04. 21.

개정 2018. 07. 26.

제1조(목적) 동학장학금은 개인이나 법인, 단체 등의 기부와 출연(현금 및 현물)에 의한 동학장학회를 설립 운영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본교 재학생에게 도움을 주는 장학제도다.

제2조(운영방법) ① 개인의 기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투자하여 물가상승률을 감안, 수입 이자에 60%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지급에 사용하고 40%는 원금에 산입함으로써 장학기금이 영구히 보존되는 방법으로 운영해 나간다.

② 예치금의 운영방법에 대하여는 출연자와의 충분한 협의에 의하고 매학기 보고를 통하여 운영에 투명성을 기한다.

제3조(위원회구성) ① 위원회는 부총장, 학생복지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 본 사업을 총괄하고 회의에 의장이 된다.

③ 부위원장은 학생복지처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리한다.

④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⑤ 장학업무에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.

⑥ 간사는 초당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학생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학업무담당자로 한다. <개정 2018.07.26.>

제4조(회의) ① 위원회는 매 학기말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5조(승인)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.

제6조(장부비치)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정리를 하여야 한다.

① 기본재산대장

② 세입장부

③ 원인행위장부

④ 지출행위장부

⑤ 세입세출증빙서류

⑥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제7조(선정 및 지급) ① 장학금지급은 동학장학위원회가 장학생 대상을 직접 선정하여 매년 3월과 9월 장학금 수여식에서 직접 지급한다.

② 장학금 출연자가 출연금의 수익금 60% 범위 내에서 특정인을 추천할 경우는 출연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.

제8조(기부금구좌) ① 1구좌당 10만원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100구좌 이상은 기부자 본인의 요구시 특별관리 할 수 있다.

제9조(기부자에 대한 예우) 출연해 주신 기부자가 원하면 원하는 장학명칭을 사용해 장학증서를 수여한다.

제10조(세부사항 등) 장학기금에 관리 및 집행에 따른 기타 주요세부사항은 동학장학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.